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3.

발 의 자 : 이용우 · 민병덕 · 김 윤
이주희 · 박지혜 · 박정현
임미애 · 백승아 · 박민규
박 정 · 김남근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, 거동 불편 노인들이 시설 입소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. 실제로 재가급여 이용자의 53.5%가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생활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나(2022 장기요양실태조사), 현재의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,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, 수급자 83.8%, 가족주수발자 74%, 의사 89%, 간호사 89.4%, 사회복지사 83.8%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. 또한 약 80%가 지역사회 거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기도 함.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남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

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인 재택
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함으로
써 의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·요양 돌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4조제
8항 및 제6조제1항제4호 신설)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등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재택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~ ⑦ (생략)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 음)
<u><신 설></u>	<u>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 동이 불편한 노인등이 지역사 회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거주 할 수 있도록 방문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제6조(장기요양기본계획)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	제6조(장기요양기본계획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재택의료센터의 설치·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</u>
<u>4.</u> (생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